제46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2020. 9. 25.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 9. 25. (금) 13:30 ~ 19: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1907호)

○ 출석위원(19명)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주재)

- 민간위원 : 국경복·문소영·박소라·박순애·안소은·양옥경·원구환*·윤여송·이덕승·이세영·이원우·이정희·이지혜·정은미 위원

* 교육부 안건 회피 / ** 불참(2) : 김윤정, 이철수 위원

- 정부위원 : 기재부, 공정위, 법제처, 국조실

* 불참(3) :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회피)

Ⅱ. 상정안건

의안번호	상정기관	의 안 명	구 분
2020-454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안건
2020-476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안건

Ⅲ. 심의 결과

1. (심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 2020-454)

□ 개 요

소관 부처	교육부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규제 사무명	사회통합전형 신설 운영
위원회 결정 내용	개선권고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반대 의견>

○ (A단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농어촌 학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법안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이 확대될 경우 첫째, 지역 고등학생들의 수도권 대학과 그 지역의 인지도 높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높아지겠으나 반대로 지역의 중소규모 대학에 학생 충원이 어려워 지면서 지역사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

두 번째,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농어촌이나 특성화고 학생 수는 보다 빠르게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할 경우 대상자의 대학진학이 과도하게 수월해져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 될 가능성이 있음

세 번째, 법안의 필요성과 관련, 그동안 재정적 지원 사업의 성과로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꾸준히 상승되어 왔음. 2022학년도 기준 정원내 8.4%, 정원 외 7.1% 총 15.5%로서 이미 평균 10%가 넘고 대입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 법안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참고로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대학들 위주로 보면 2022학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 신청 대학 중 수도권 대학 중에는 4개 대학만 현재 기준 10%에 미달되고 있고,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은 이미 10%에 거의 육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전형은 확대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대학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가 분명한 현 상황에서 규모나 인지도에 관계없이 지역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학생들을 다 뺏기게 됨으로써 우수인재 유치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음

교육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차등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 앞에서 말한 이유로 법안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꼭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재정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됨

○ (○○○ 위원) 지원사업 등으로 학교마다 배려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회균등 전형 학생의 입학생 성과분석 같은 것을 학교마다 해본 적이 있는지?

○ (A단체) 학교마다 대부분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위원) 그러면 성과 학습성적 우수성은 어떤지? 탈락 학생이 있고 못따라가서 괴로워 하는 학생이 있는데 비율이라든지 분석해 본 적 있는지?

○ (A단체) 대학마다 사정이 다름. 입학생들의 전형 유형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나 학교 적응력에 크게 전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것이 구체적 연구결과임

○ (○○○ 위원) 정원 내 정원 외 두 개 다 합쳐서 비율계산 하는데, 정원 내와 정원 외의 차이점과 재정지원은?

○ (A단체) 원래 정원 외 모집 최대 5.5%, 특성화고 졸업자 뽑으면 추가 5.5%로 해서 전체 정원 외 전형으로 11%까지 뽑을 수 있음. 주로 대학들이 정원 외를 활용 했음. 정원 내를 늘려온 가장 큰 요인이 교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의 책무성 강화지표를 늘리면서 정원 외 전형은 퍼센트가 제한이 되니, 대학에서 지원사업을 정원 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 대학이 정원 내를 늘려옴

○ (○○○ 위원) 재정이 좀 좋은 대학은 이 비율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기타 재정이 좀 열악한 대학은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봐도 되는지?

○ (A단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왜냐하면 정원 내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정원 내 비율 자체도 높지 않았음.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상위권 대학들도 재정지원사업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어떻게든 진입하고 유지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지표관리를 해왔음. 그러면서 정원 내도 지속적으로 늘어온 것

○ (○○○ 위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위성적권, 스카이나 비스카이, 이를 차별해서 법에 규정할 수 있겠나?

○ (A단체) 그건 어려울 듯. 어차피 고등교육법에도 대입은 자율적으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함. 다만, 예를 들어 정원외도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농어촌 4%, 특성화고 1.5%까지,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그룹은 제한두지 않고 세 그룹 합이 5.5% 까지임

학령인구와 농어촌 인구, 특성화고 학생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등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칸막이 퍼센트는 허물든지 좀 줄이든지, 농어촌 4%를 좀 줄이고, 5.5%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함. 그 부분은 나중에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

○ (○○○ 위원) 대교협은 대학들의 모임이라 생각하는데, 각 대학 의견을 취합한 것인지, 각 대학들이 각자 의견 제시, 대교협 별도 의견 제시했는지, 취합 또는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각각 냈는지?

○ (A단체) 각각 별도로 의견 냈음.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할 때는 대교협에서 반대하겠지 하고 안낸 것으로 보임

○ (○○○ 위원) 다른 대학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 위원) 대교협의 의견은? 협회 사람들의 의견인지?

○ (A단체) 대교협 전체의 의견임. 전국 처장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 대교협에서도 반대의견을 낼 것인데, 각 대학에서도 의견을 사실 내기로 의견이 있었으나, 각 대학이 실무적 측면에서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함

○ (○○○ 위원) 결국 대교협의 의견이라 함은 대교협의 간부 몇사람이 모여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대학 처장들의 회의 통해 의견을 모았다는 것. 거기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 맞는지?

○ (A단체) 맞음. 단, 이 목적으로만 따로 회의해서 대교협이 대표해서 반대 의견내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법안이 법제화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처장 협의회에서는 논의가 됐던 내용임

○ (○○○ 위원) 지역균형발전 전형 실시하면 지방대학의 충원이 우려되고 학령인구가 감소되어 굉장히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방대학은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현재 상황은?

○ (A단체) 지금도 지방대학은 충원이 어려운 것은 사실임. 지금 현재도 충원이 어려운데 학령인구도 감소하는 데다가 요즘 학생들의 지원성향은 뚜렷함. 예전처럼 호남학생이 영남학교를 지원하고 이렇게 지역간에 이동이 활발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첫 번째는 수도권 대학이고 수도권 대학이 안될 경우 그 다음은 그 지역 대학임. 이런 상황에서 학령인구도 줄어드는데 그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법안임.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 대학은 학생들의 충원이 지금보다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함

○ (○○○ 위원) 구체적인 수치로 법에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1%p를 올렸을 때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더 혜택을 보게 되

는지? 그 지역 대학이 타격이 심하다고 하는데 수치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 (A단체) 예를 들어, 수도권에 지역 학생들에 대한 정원이 얼마만큼 올라갔을 때 지역대학의 충원이 얼마만큼 어려워진다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

○ (○○○ 위원) 기회균형 전형을 해왔고 주로 대상이 농어촌 학생인데, 농어촌 학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 (A단체) 현재의 이 법안에서 나온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현재 입학 시스템에서는 고른기회전형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고른기회전형은 농어촌, 특성화고 학생들, 서해5도 학생들, 장애인 다 포함되어 있음. 농어촌의 경우 학생과 부모는 함께 6년을 농어촌에 거주해야 하고, 학생 혼자인 경우 12년 전체를 다 농어촌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가지고 있음

○ (○○○ 위원) 그럼 그 농어촌의 근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인지?

○ (A단체) 자격요건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하고 있음. 다만 농어촌의 경우 지역을 대학에서는 읍·면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화 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시로 되어있더라도 읍·면보다 더 열악한 지역도 있음. 그래서 지역 같은 것은 대학이 농어촌 전형을 실시할 때 그런 것을 알아서 감안해서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위원) 사배자 중에서 아까 농어촌 비율이 높고 다른 것은 좀 낮다고 했는데 대충 비중을 알 수 있는지?

○ (A단체) 21학년도의 경우 정원 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즉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학생들이 전체 1.32%, 농어촌 지역 학생이 2.69%, 특성화고 졸업자가 0.86%임

○ (○○○ 위원) 이른바 정부의 이런 방침을 따랐을 때, 나중에 예산을 배정할 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수준보다 1%p 더 올렸을 때,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 (A단체)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정량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는 않음. 다만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라는 지표가 있어서 지금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비율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정성적으로 평가함. 평가지표가 100점 만점 중 약 15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이것을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뽑으면 몇 점이 아니고, 이 고른기회전형을 어떠한 전형으로 운영하는가도 보게 됨. 예를 들어 대상은 이렇지만 이것을 주로 수능으로 뽑는다든지, 그러면 사실 배려하기가 어려은 부분.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모집비율 뿐만 아니라 전형방법, 전형요소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점수가 15점 정도 된다는 말씀임

○ (○○○ 위원) 15점이면 재정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 (A단체) 요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각 대학의 지표값들이 평준화 된 상태임. 상대평가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이런 지표들을 올릴 수 있

는 여지가 많지 않음. 그 중 하나가 이 지표이기 때문에 15점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짐

○ (○○○ 위원) 처음에 법령개정보다는 재정지원지표의 포션을 넓혀서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셨는데,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 이미 대학이 최대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좋은 지표를 이루어 놓은 상태라 별 유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듬

○ (A단체) 그것도 맞는 말씀임. 그런데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처음 지표가 들어간 것이 지역균형발전전형임. 그 지표의 기준이 지역 추천전형은 10% 이상 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10% 이상일 때는 몇 점, 10% 미만일 때는 몇 점 이렇게 정량적으로 부여가 되었음

그러면 사배자 전형도 이런 방식으로 지표를 정량화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확대효과가 분명히 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정성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을 다 놓고 전형요소까지 같이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했던 지역균형발전 전형처럼 일정 비율을 두고 정량적인 포션을 둔다고 하면 그 효과는 분명 있을 거라고 보여짐

○ (○○○ 위원) 이 법 자체가 결국은 특정 대학들, SKY라고 하는 특정 대학들을 타깃으로 한다고 한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들어오는 학생이 고등학교별로 거의 일정함. 몇몇 특정학교, 영재고나 과고 등의 비율이 많고 다른 데는 학교별로 한두명, 두 세명 일정비율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정원 내를 강제적으로 높인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을지? 피해라는 것이 고등학교들이 균형점으로 한 두명씩 서울대 진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 (A단체) 서울대에 특수하게 지역균형 선발이 있음. 각 고등학교별로 두 명씩만 추천할 수 있는 전형이 서울대에 있는데, 서울대가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전형임. 그런데 지역균형전형 말고 여전히 일반학생과 수능이 남아있는 상태로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일반학생들의 불만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예를 들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서울대에 지역균형의 수능최저기준 완화를 대교협에서 허가를 했음. 고3 학생들 배려차원에서 했던 부분. 그 완화한 정책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재학생들에게 전혀 불리함이 없는 정책임. 다만 이 정책을 세우면서 일부 어떠한 학생들이 불만을 가졌냐고 하면 결국은 이 수능최저가 완화가 되면서 정시로 이월되는 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임. 예전에는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그대로 정시 수능으로 이월을 해서 더 뽑았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그래서 이게 전혀 피해가 없다고 볼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음

서울대라고 하는 상징성 등을 생각했을 때 여기 비율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거기 채워지는 일반학생들의 불만은 많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수능 위주가 수도권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고 했을 때 수도권 학생들이 더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함

(2) 부처 의견청취

○ (교육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 중에 경제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 양극화 내지는 교육 양극화도 또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 그런데 교육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이 사회통합 기능인데 지금 교육도 양극화가 고착화되어가면서 이런 기능을 잘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는 반성이 있음. 그에 따라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배려를 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 고등교육 기회를 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생각

그에 따라서 사회통합전형이 그동안은 권고 사항 내지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유도하는 정책을 펴 왔었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오지 않았냐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 수치로 증명 되고 있음.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어느 한도 이내에 목표를 설정해서 대학에서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 정부방침임

교육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사회적 요구라든지 법제처와 논의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양해를 하신다면 수정안을 제출하겠음

(수정안 보충설명) 당초 개정안에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들을 차등적 교육적 보상의 필요에 따라서 뽑아야 한다고 하고 일정비율은 제시하지 않았음. 그런데 여기에 지나치게 높게 잡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 다시 수정하기를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전체 모집인원 및 해당 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을 하되, 그것

도 대학의 규모나 설립목적 등 여건을 감안해서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1항의 내용임

2항은, 대학에 따라서는 15%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일부 대학이 있음. 그래서 15% 범위를 초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2항으로 두었음

그리고 모든 사항을 결정할 때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대학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3항을 수정안으로 제시

과거의 2항, 소위 지역균형선발은 그대로 4항으로 정리. 지역균형선발은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였음

○ (○○○ 위원) 100분의 15의 범위라고 했을 때 그 결정하게 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집인원과 목적 등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달리 정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 (교육부) 15% 범위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 수치임. 2019년도 전국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 평균치가 11.1%인데 2020학년도는 13.3%, 2021학년도 계획은 13.8% 이런 식으로 차츰 올라가고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 정도밖에 사회통합전형을 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고, 사회적 배려자 전형에 대해 관심이 없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치에 근접한 수치를 제시하고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하고자 정한 것

모집인원이나 설립목적 등 여건을 고려한다는 것은 대학의 규모에 따라 형편이 다르고, 설립목적이 종교계나 예술계 대학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다를 수 있어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다르게 정하는 등 대학의 여건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음. 절차는 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교협, 대학, 관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서 목표치를 정하겠다는 것임

○ (○○○ 위원) 계속해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비율을 올리고 있고, 교육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재정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전혀 응해주지 않는 특정 대학들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굳이 법안에 15%을 넣어 개정하려는 이유는?

○ (교육부) 서울 시내 주요 대학 가운데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수치가 떨어지는 대학이 있음. 우리나라 대학 사회를 이끌어 가는 대학들이 오히려 ‘09년보다 ’19년 실적치를 보면 떨어지고 있음. 몇몇 주요대학은 정원 내는 뽑지 않고 정원 외로만 뽑으면서도 4~5% 밖에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 (○○○ 위원) 자료를 보면 몇 개 대학의 문제로 보임. 11.1%가 전체 대학 평균이라고 하지만, 몇 개 대학을 빼면 상당한 비중으로 선발을 하고 있음. 전체 선발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몇 개 대학 때문에 법으로 강제해서 교육부가 교육적인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부담을 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만약 몇 개 대학이라고 하면 인센티브 등으로 개선시켜 나갈 여지가 있어 보이고, 또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 선발비율이 높을 것이 예상되는데 오히려 수도권 대학보다도 낮은 비율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관리가 잘 안되었는지?

○ (교육부) 15%는 평균인데, 198개 대학의 여건이 다 다르다 보니 평균적으로는 근접하고는 있지만 대학마다 사정과 여건에 따라서, 지방이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건 15%에 근접하지 않는 대학이 아주 많고, 교육부는 이것을 좀 더 공정하고 균등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기회균형의 기제로 삼고자 함

물론 대학들도 노력을 하고, 또 재정지원사업으로 유도하여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평균이 숨기고 있는 분산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격차들, 그리고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분포하는 점 등이 있어, 이 제도를 보다 많은 대학들이 사회적인 책무성을 지키기 위한 유도 기제로 삼고자 함

법률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사회적 책무성 지표가 있는데 13~14년부터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더 많이 유도를 하고 있음. 법제화와 함께 이런 재정지원사업에서도 더 많은 대학들이 책무성을 지울수 있게끔 노력을 할 계획임

○ (교육부) 보충설명 드림. 몇 개 대학이라고 하니 소수 상위권 대학만 국한된 현상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데, 10% 미만인 대학이 수도권에 75%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대부분이 평균치 이하라고 할 수 있고, 그동안에 재정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통해서 이를

견인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재정지원은 이것 하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표가 많이 있고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사회통합전형이 들어가는 것이라 한계가 있음. 사회적 책무를 앞장서서 지켜줘야 할 주요 대학들이 이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 배려하는 것에서는 많이 뒤쳐져 있음

○ (○○○ 위원) 사배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인데, 그동안 사배자에 대한 혜택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음. 예를 들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같은 경우 특정 학생에게 혜택주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문제임

농어촌 전형의 경우 농어촌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의 선발 비중을 일정 부분을 가져간다고 하면 앞으로 갈수록 혜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 학교에서 수업을 과연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탈락하는 부분들을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소위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해 그동안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서 이 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인지?

○ (교육부) 재외국민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보지 않음. 농어촌이나 북한 이탈주민으로 들어온 아이들 가운데 중도탈락이 있고, 중도 탈락하는 이유가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다시 찾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단지 학비 지원만 받아서는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

교육부는 제도적으로 입학시키고 장학금 주고 하는 것까지 하고, 일부 생활 보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그런 아이들

을 더 길러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고 한다면 중도탈락이 좀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농어촌 전형이 확대되면 혜택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이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생각함. 지금 농산어촌 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농산어촌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배려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농산어촌 쪽 인구가 자꾸 줄고 있음. 줄어드는 인구를 이런저런 제도, 이런저런 정책을 통해 인구를 좀 더 늘려가기 위해서도 이 제도가 꼭 필요

○ (○○○ 위원) 사배자 전형의 개념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 교육부에서는 사배자 전형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15% 정도가 들어와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응시자 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 (교육부) 대체적 통계는 있음.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폭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15%~25% 내외로 보고 있고, 15%에 대한 근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대상임.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아, 농어촌 지역 학생 및 도서벽지 학생들, 기타 특성화고 졸업해서 동일계열에 진학하는 아이들, 또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개념 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단원고 학생들에 적용된 적이 있고, 서해5도 거주자에 대해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한 경우가 있음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역시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아이

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15%는 19년도에 11.1%, 20년도에 13.3%, 이런 경향치를 볼 때, 더 높은 목표치를 담았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으시니 15% 이하에서 목표치를 잡겠다는 것임. 그 목표치는 대통령령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 정할 예정

○ (○○○ 위원)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하는 그런 잠재적인 지원자군이 응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학생들은 100%가 다 오고 나머지 학생들은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 우리 사회 전체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교육부가 15%로 정한 것으로 보임

○ (교육부)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15%에서 25% 정도로 추정이 됨.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볼 것인가가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인데, 대부분 정원 외로 시행을 함. 정원 외로 배려하여 선발을 하게 되면 정원 내로 들어오는 다른 아이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 (○○○ 위원) 2항에 대한 질문.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 대학에서 일정 퍼센트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대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뽑고 있고 이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 이렇게 똑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방대에 지역인재를 뽑으라고 하고 수도권 대학에 또 지역균형전형을 뽑으라고 하면, 지방대에서는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나 하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 (교육부) 지역에 있는 대학의 바램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바램이 서로 조금 상충이 되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서 자기발전을 하고자 원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임. 지방대육성법은 모든 학과가 아니라 의대, 약대 등 소위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학과에 국한해서 뽑을 수 있도록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지역에서 취업이 잘되고 누구나 가고자 하는 그런 학과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을 조금 달리 본다면 굳이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다 간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 지역대학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역균형선발에 있어서는, 서울대학이나 한양대학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역균형선발로 들어온 아이들이 3-4학년때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이나 적응도가 높고 학과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통계치가 많이 나오고 있음

○ (○○○ 위원) 그동안 교육부가 열심히 해서 11.1%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각 대학마다 대학의 이념도 있고 대학에서 추구하는 사회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강제로 대통령령으로 몇%, 몇% 정해서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전체로 15%를 달성하면 되지 모든 대학별로 획일적으로 규율을 해야 하는지?

○ (교육부) 수도권 대학이 10% 미만으로 하고 있는 곳이 75%이고, 사회통합전형에서 그야말로 우리사회에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대학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도정책을 펴왔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음. 특히 서울 시내 소위 상위 16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그 실적이 아주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의무가 필요. 이것은 마치

장애인 고용촉진법이나 청년고용촉진법, 남녀고용평등에관한 법률 또는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 뽑는 법률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 위원) 지역균형발전 전형의 의미가 무엇이며,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지역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들에 지역에 있는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가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10년 이상 운영해온 제도인데, 그렇게 운영해온 결과 사배자들에 대한 차별에 관한 것이나 사회에서의 배려에 대한 이슈 등 10년 동안 어떤 변화를 이루었기에, 지금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증가하게끔 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기 바람

○ (교육부) 10년 동안 자발적으로 증가해왔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그렇게 했지만 유독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10년 동안 뒤로 후퇴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으며, 성균관대 '09년 대비 '19년이 -1.8%p 이고, 서강대가 -0.9%p, 고려대 -0.7%p, 연세대 -0.5%p 임.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런 대학들은 사회적 책무를 좀 등한시 한 것 아니냐, 정책적인 유도만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평가가 있음

앞에 말씀하신 것은 교육과 대학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정책이 다 같이 가고 경제정책이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다만 중요한 것은 지역대학도 문을 열어놓고, 수도권 대학도 문을 활짝 열어놔서 이런 아이들이 그야말로 요즘 젊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생망'이 아니도록, 이

번 생에는 망했다고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할 책무가 우리 어른들한테 있지 않나, 우리 정부에 있고, 우리 대학에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런 제도를 튼튼하게 마련하고자 법률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림

○ (○○○ 위원) 2항에 대한 질문. 당초 개정안 2항에서 모집비율뿐만 아니라 선발방식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조금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부처의 의견은?

○ (교육부) 대학 선발방식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 내신으로 하는 방법, 수능 정시, 논술 등 특기로 하는 방법.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또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유리하다거나 건강하게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내신을 통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실제 서울대학이나 연대, 고대도 다 지역균형선발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균형선발은 학교장 추천에 의한 내신에 의해서 학생부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발방식을 넣었음

○ (○○○ 위원) 정원 외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15%로 정하면 이 15%를 모두 다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가 정원 외로 가능한지?

○ (교육부) 항목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11.1% 기준으로 해서 정원 내가 5.1%이고, 정원 외가 6%임. 총 정원 대비 6%를 추가로 뽑고 있는데, 그 경향치가 수도권은 정원 외가 6.7%, 정원 내는 2.1%, 즉 정원 외로 많이 뽑고 있고, 비수도권은 정원 내가 7%, 정원 외가 5.6%로 사실 정원

내외를 굳이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

○ (○ ○ ○ 위원) 첫 번째는, 지금 수도권의 몇 개 주요 대학은 오히려 선발비율이 후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두 번째는, 학생들의 학업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오히려 수도권 메이저 대학에서 학업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을 대학의 책무로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 몇 사람의 교수들이 그 학생을 상담하고 또 따로 수업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지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기회균형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많이 주는데, 비율이 늘면 학교에서는 장학금 부담이 클 것임. 장학금 재정부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배려가 있으신지?

○ (교육부) 선발비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대학에서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신경쓰고 배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덜 뽑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대학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한 명이 더 들어옴에 따라 들여야 될 비용이 더 늘어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들어올수록 장학금을 줘야 하거나 근로 장학생으로 해야 하는 등 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음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고 있고, 대부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되는 아이들은 국가장학금을 거의 다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

고, 거기에 더해서 생활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그것이 국가에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학도 어렵지만 사회적 책무로서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춰줘야 하지 않나 생각함

○ (○○○ 위원) 현재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그대로 두고 사배자 비율만 15%로 상향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제반 상태에서 교육부가 목적하는 취지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임. 이것은 수도권 대학의 여러가지 문호를 열어주면서 지방대학을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립과 국립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지금 수시와 정시가 80대 20의 비율임. 우리가 논의하는 전형들이 다 수시에 포함되는 것인데, 수시 내에서 정원 외도 총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결국 공정성 관점에서 보게 됨. 그리고 15~25%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원 가능한 숫자가 20%가 안될 것으로 보임. 15%라고 하는 것은 풀을 초과하는 목표가 될 수도 있음. 규제목표를 위해 설계된 숫자들이 그 목표를 이루는데 적정한 숫자인지 의문이고, 이 숫자는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부작용을 낼 수 있음

○ (교육부) 목표로 잡은 15% 상한이라는 것이 정해야 할 최소한의 합의선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도 뽑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범위내에서 시행령상의 구체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과 제도적인 정합성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체 총수가 20% 미만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회발전

이나 사회변화에 따라서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이 점점 많아지고,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대안학교 출신 등 여러 가지 개념이 앞으로 변화가 되면 얼마든지 더 확대될 수 있는 개념임

○ (○○○ 위원) 전반적으로 비율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주요대학이 비율이 너무 낮아 그것이 이 제도의 타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교육부) 꼭 주요 대학이 목표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좀 있어야 하겠다는 취지임. 주요 대학은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그런 대학이 먼저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임

○ (○○○ 위원) 기회균형 선발비율을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의무화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이 비율 정하면서 교육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 전문가와 대학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것인 듯. 그래서 의무비율이지만 실제로는 협상해서 정하는 비율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협상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을 어긴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 (교육부)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대학평가에 반영되어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음

○ (○○○ 위원)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관련 쟁점이 있는데, 모집인원과 설립목적만 규정해 놓아서 대학의 소재는 필요가 없는지? 중요한 부분인데 예시에 빠져 있음

○ (교육부)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등 여건' 이라고 하는

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함. 필요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음

○ (○○○ 위원) 확인 결과 직접 제재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고등교육법 60조에 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한내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취소, 학생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 위원) 기존에는 대체적으로 10% 내외에서 해온 경향이 보임. 15%라고 정한 것이 하나의 규제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수치적인 명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인지?

○ (교육부)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13%를 넘어서고 있음. 그래서 상한선을 15%로 현실치로 보고 잡았고, 대통령령에서 잡는 목표치는 상황이 어려운 대학이 있기 때문에 15%를 잡을 수는 없고, 3항에 나와 있는 전문가나 대학의 의견을 들어 정할 예정임. 아마 교육부는 10% 내외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대학과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의견을 받고 있음

○ (○○○ 위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방식으로 배려하겠다는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듯. 대학도 그런 취지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곳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학별로 심한 편차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인 조사나 원인 분석을 듣고 싶은데 조금 명확하지 않음. 왜 대학에 따라서는 4%, 5%, 또 다른 대학은 10%, 20% 되고 있는지, 대학의 부담 가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대학이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될 것 같은데, 왜 어느 대학은 그 부담을 크게 느껴서 못하고 있는지 보충설명 바람

○ (교육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철학 또는 경영이념 등 다 제각각 있을 것이라고 보여짐. 예를 들어 천안에 나사렛 대학이라는 아주 작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장애인들의 천국임. 대학을 운영하면서 어떤 이념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무를 어느 정도 우리 대학이 감당할 것인가 이런 데서 그런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임. 그래서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을 얼마나 감당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학 간의 편차가 있지 않나 생각함

그래도 많이 하려고 하는 대학 중에는 또 다른 목적에서 아주 열악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이라도 받아서 정원을 채우고자 하는 대학도 있고,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굳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까지 뽑지 않아도 정원이 충분히 찰 수 있고, 우수한 아이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목표, 이념, 철학 이런 데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함.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정책적 유도를 하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법제화라는 것이 필요함

결과적으로 보면 대학자체의 성격이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 안에는 대학의 여건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유도도 들어가 있음. 예를 들어 국립 교대 같은 경우는 15%-20%까지 가기도 하며, 제도적 유도를 통해 지방 국립대의 경우도 높음. 고등교육법 자체에 의대, 치대, 한의대, 교대 이런 곳은 20% 이상 유도를 함. 다만 수도권 대학은 충원률에 걱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 정원 내로 먼저 채우

고 정원 외로 채우는 경향

○ (○○○ 위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의무화가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적 부담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서 끌고 갈 것인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은 대학 평가에 일부 항목을 넣어서 하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장학사업을 확대한다든지에 대한 수요로까지 곧바로 지원이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음. 그 부분은 문제 해결에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해 보임

○ (교육부) 양자가 다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는 제재나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양자가 다 가능하다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 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가 조금 미흡해 보임. 이것이 가령 10%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할 때 지금 4%나 5%로 모집하고 있는 대학에는 부담이 두배 이상 가중될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교육부) 그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갈 예정임. 대통령령에서 한꺼번에 10%가 아니라 단계를 둬서 목표치 달성을 유도하려고 함. 대학의 규모, 위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모집비율을 통칭해서 '~등 여건'이라고 하였는데,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

(3) 위원회 논의

○ (○○○ 위원) 수정안이 당초안과 달리 나와서 수정안을 기초로 말씀을 나누겠음

○ (○○○ 위원) 전반적으로 입법의 취지는 공감. 현재 대학의 정원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를 정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 목적을 잘못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15%는 아니라는 생각

두 번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룰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임. 이런 경우 국립대학부터 적용하고 사립대학은 사립대학 나름의 교육 목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임

○ (○○○ 위원) 지원금액이 70개 대학에 7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개별 대학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1, 2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그동안에도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저는 근본적인 철학이 문제인데, 교육부 입장은 몇몇 대학이 말을 안 듣고 안 쫓아와서, 그 대학들이 왜 안쫓아오는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음. 대학이 무슨 사업자도 아니고 그 대학이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인데 모든 대학이 다 그렇게 10% 이상씩 해야 한다는 사고 자체가 대학교육과는 맞지 않는 정책목표인 것 같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15%든, 20%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것을 위해 정책을 집행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A대학은 15% B대학은 10% C대학은 7%로 정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고등교육법 60조에 의해서 매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결국은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입시 반영비율을 정하겠다는 얘기임. 이런 식의 대학 교육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국립이고 사립이고를 떠나 의무로 각 대학의 입시비율을 정한다는 취지임.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움. 생각

같아서는 철회권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정부나 국가적인 과제 이런 것을 고려하면 권고 방식인 노력 의무로 해서 오히려 재정적 지원을 많이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함

○ (○○○ 위원) 사실은 철회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고등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 해야 할 방향이지만, 지금 이시점에서 사회적 배려라는 고민을 했을 때에는 의무규정을 권고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선권고 쪽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고등교육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부가 너무 대학의 모든 운영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사회로 가는데 있어서는 조금 참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 (○○○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학, 특히 수도권 대학, 수도권 상위대학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고등교육을 넘어섰음. 사회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그래서 저는 이 법 개정안이 사회통합전형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사회통합의 요소들, 장애인부터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은 국회라고 생각함. 그래서 이 법안은 이제까지 사회통합전형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상 강력한 권고형태인 재정사업 형태로 했는데 잘 안되니 의무화 시켜서 공론화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국회에 가서 논의를 할 부분이 있다고 봄. 그래서 저는 원안을 통과시키고, 다만 여기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규개위로 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저희가 심도있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법률 개정안 자체는 원안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위원) 당초 개정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은 당초 개정안은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적 위임을 해 놓음. 그것을 보면 교육부가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정안을 보면 교육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당국과 협의해서 그 균형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대통령령에서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스카이 대학은 지금 5%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3년 정도 단위로 하게되면 2%, 2%, 1% 씩 올리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듯함. 그 정도로 하면 지금 10% 넘어가는 대학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사회통합의 취지도 살리고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령에서 좀 더 심도있게 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정안을 반영하여 원안동의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임

○ (○○○ 위원) 과연 교육부가 이 취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 경북대, 부산대만 하더라도 전형비율이 낮음. 지방 국립대학도 이런 상황인데 그 동안은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법제화를 통해 강제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권고 수준이라도 대학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또 사회적 배려대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분석하고 개선안을 가지고 전체적인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임. 권고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음

○ (○○○ 위원)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는 좋으나 15% 라고 하는 숫자가 좀 막연함. 이렇게 하면 실효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교육부가 갖고 있는 다른 정책수단들, 재정사업 등 다른 여러 가

지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00분의 15라고 하는 범위로 의무화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

○ (○ ○ ○ 위원) 수도권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방에서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농어촌 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 지금 현재 권고 수준에서 평균 11%를 달성하고 있고, 이 정도를 유지한다면 그 모수가 줄어드는 것을 생각할 때 유지하는 상황만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따라서 의무화보다는 권고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음

○ (○ ○ ○ 위원) 오히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 분명히 수도권으로 학생이 많이 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또 일반학생들이 느끼는 기회 박탈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쪽에 기회를 주기 위해 다른 한쪽의 기회의 공정성을 저해할 것이 우려됨. 또 한 가지는 재정적으로 대책 없이 의무화되는 것은 과도하고, 권고로 하는 것이 좋겠음

○ (○ ○ ○ 위원)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을 권고규정으로 개선하는 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선권고로 하면서 대학이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보완해 가면서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역균형선발은 선발방식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전체에 대해 다 개선권고를 하고, 재정적 부담 해소 방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개선권고 의견을 내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음

○ (○○○ 위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회통합이라는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대권고 등으로 했으면 좋겠음

○ (○○○ 위원) 수정안에서는 모집인원, 설립목적 이런 것만 예시를 해 놓고 있어서 '등 여건'이 좀 모호함. 최대한 모호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심의 결과 : 개선 권고

○ 위원회에서는 심리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표결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우선 당초 개정안이 아닌 수정안을 대상으로 함. 수정안은 역시 당초 개정안과 동일하게 의무규정의 형식을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의결 결과로는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의 형식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으면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 '대학의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 여건을 고려하여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등 여건'의 문구가 모호함. 그 부분도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호성이 없게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 기회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학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직접적인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도 병행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임

- 지역균형선발에 대해서도 개선권고 의견임. 개선권고의 취지는 2항 후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으로 선발방식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선발방식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2020-454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정안에 대한 개선의견대로 의결함

2. (심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중기부, 2020-476)

□ 개 요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근거 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제 사무명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등
위원회 결정 내용	계속심사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찬성 의견>

○ (A단체) 최근 6년간 701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약 1조원,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13.6억원 정도임. 유출 기술은 설계도면, 연구 데이터, 최종연구 결과 자료, 시제품, 아이디어까지 포괄적인 부분에서 기술유출, 유용행위가 일어남.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때 조건 없이 제공하는 비율이 76.5%임. 주지 않았을 때, 거래 단절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줄 수밖에 없음. 기술거래와 관련된 자료나 계약서 없이 기술을 제공했을 때,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입증 자료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NDA(비밀유지계약)는 이러한 부분을 증명하고, 스스로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한 가지 피해사례를 보면 대기업으로부터 계약 체결 전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1년동안 2억을 투자하여 제작을 완료, 납품을 제안한 업체가 있었음. 대기업에서는 납품을 빌미로 설계자료, 도면, 부품, 특허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해당 기업은 계약서 없이 제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품 양산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음. 그런데 경쟁업체에서 그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이에 대해 소명할 자료가 없는 문제가 있었음. 기존

법에 보호장치가 있으나 서면은 계약이 아니고, 법적 효력이 없음. 이번 상생협력법에 비밀유지계약 근거를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위원) 서면의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면을 통해서 전혀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지?

○ (A단체) 실제 중소기업들이 서면을 받는 비율을 보면 53.8%는 서면을 못 받고 있고, 서면을 받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있음. 쌍방 간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줌. 권리귀속, 배상, 유출 문제점 지적이 담겨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빠지고, 일방적으로 기술자료를 준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내용임. 그런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위원)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 같음. 해외 사례 중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법령이 있는지?

○ (A단체) 미국에서는 도입됐고, 중국에서도 입증책임 전환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체적인 법령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충분히 그런 움직임이 있음. 상생협력법의 입증책임 전환은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데이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보이면,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 위탁기업도 증명해 보이라는 반반의 책임이 있는 것임. 그래서 완전한 입증책임 전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피해 주장 기업과 그 반대 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해결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입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비밀유지계약을 추가한다고 해도 비밀의 범위가 애매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봄.

○ (A단체) 기본적으로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술자료인지 아닌지는 이미 업계에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음. 기업에서 공개하지 않고 본인만 알고

있는 배율방식 등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밀들이라고 봄. 이를 달라고 하는 경우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함. 만일 NDA를 맺지 않고 준다면 비밀유지성이 깨지고, 일반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 다른 서비스 업체 사례가 있음. 대기업의 ERP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개발 업체로 남아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지 보수 업체를 원청업체가 바꾸겠다고 함. ERP 개발, 유지 노하우는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충분히 보호할 이유가 있음. 이것을 위탁기업이 돈을 주고 개발했으니 두고 가라고 하면 해당 기술을 갖고 나가서 사용할 수 없음. 이미 그 자체가 다른 기업에 귀속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임. 비공지성이 깨지며 일반화되는 문제가 있어, NDA를 맺어 피해를 배상하고,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권리귀속 문제를 특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

○ (ㅇㅇㅇ위원) 동일한 자료를 수탁업체는 기술자료로 보고, 위탁업체는 기술자료로 보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은지?

○ (A단체)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기술자료 여부를 두고 분쟁이 계속된다면 계약 자체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 계약서를 포기하고 납품하게 됨. 기업 간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힘의 비대칭성에 의해 갑을 관계가 생기고, 기술자료가 한 쪽으로 쏠려가는 문제가 발생함.

○ (ㅇㅇㅇ위원) 그런 부분은 NDA가 아닌 특허 등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A단체)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보호를 받는 것이고, 비공지성 부분은 특허를 받지 않은 기업 비밀이 존재함.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대기업은 거의 알고 있고, 이를 요구했을 때 주지 않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음.

○ (ㅇㅇㅇ위원) 기술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제공을 요구하고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지?

○ (A단체) 단가 인하 요소로 쓰는 경우가 있음. 예외적으로 대기업들이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그들이 제조라인에 필요한 기술인지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기업은 저희 조사자료에 의하면 20%가 안 됨.

○ (○○○위원) 그렇다면 기술자료를 요청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 (A단체) 대기업에서 나에게 맞는 협력업체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 소비자 보호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봤을 때, 납품자가 내가 만드는 브랜드, 신뢰도에 걸맞는 업체인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음. 그런 경우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있음.

○ (○○○위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을 잘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문가가 중소기업에 있는지?

○ (A단체) 그렇지는 않음. 중소기업에서 법무팀을 갖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과 거래 시 국내 대기업들도 제일 먼저 NDA를 체결함. 우리도 수평적 기업 거래 관계가 형성된다면, NDA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합리적으로 하고 거래까지 이어진다면 기술분쟁 문제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함.

○ (○○○위원) 언급한 ERP 업체 사례를 보면 거래 전속화가 우려됨.

○ (A단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술거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생각함. ERP 사례와 관련하여 원래는 기술거래를 해야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고 타 업체와 계약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음. 갖고 있는 기술을 더 낮은 단가의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은 거래 질서도 훼손되고, 기술거래 시장도 죽게되는 문제가 있음. 단순히 계약서 작성의 문제가 아닌 포괄적으로 기술거래까지 양성화될 수 있는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함.

○ (○○○위원) NDA에 들어가는 내용과 관련하여 대립이 있을 수 있음. 기존 서면발급 의무도 잘 이행되지 않았는데, NDA를 맺을 때 협의가 가능한지?

○ (A단체) 그래서 구속력을 갖기 위해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권한을 중기부가 갖는 것으로 이해함. 또한 NDA를 작성한다 해서 모든 것을 담으면 비공지성이 깨지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부분을 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음.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 업종, 제품, 기술에 맞는 것으로 정리해서 양자간 체결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업간 상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음.

○ (○○○위원)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 (A단체) 자료제출명령권과 연동되지 않을까 싶음. 실제로 손해배상을 할 때 손해배상을 추정하거나, 근거를 만들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손해배상을 매길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만들지 못하면 제도는 있더라도 피해 보상까지 이르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위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반대입장에 대한 의견은?

○ (A단체) 반대입장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반하고, 특정 업체 전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 두 가지 논리를 들고 있다고 알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들이 외국에 수출 시에는 이미 NDA가 일반화되어 있음. 우리나라 수·위탁기업 관계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있는데, NDA가 쓸모없고, 일방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계약 자유의 원칙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든 기술을 대기업이 인정하고 거래를 통해 산다든지, 더 좋은 기술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 (○○○위원) NDA와 서면이 내용상 많이 중복될 수 있어 보이는데, 두 가지가 나름 목적이 있고 유용하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할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 (A단체) 당사자 간 얼마나 합리적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서면발급으로도 예를 들어 권리 귀속, 손해배상 사항을 명시하며 정확히 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음. 문제는 서면발급은 현행법상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적 구속력을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NDA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면 AA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품질관리를 조건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도면, 기술을 요구받음. 이미 거래 관계에 있으니 믿고 서면, 계약서 없이 제공했는데, 어느 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했고 원계약에 제3자 판매금지 사항이 들어있어 만든 기술을 다른 업체에 팔아야 하는데 그것마저 막힘.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서면발급보다 NDA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봄.

○ (○○○위원) 그렇다면 NDA가 의무화된다면 서면발급 조항은 없어도 되는지?

○ (A단체) 그 부분을 고민했었음. 모든 부품을 납품할 때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오히려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음. 그 부분은 정부에게 공을 넘기고 싶음.

○ (○○○위원) 지금 법안은 선택적인 것은 아니고 중복해서 하도록 되어있음.

○ (A단체)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 보임.

○ (○○○위원) 꼭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인지?

○ (A단체) 그러함.

○ (○○○위원) 법률안처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모든 경우에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면 중소

기업 기술보호 측면에서 서면발급 의무가 추가적으로 갖는 기능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A단체) 이해관계자로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중기부에 제안했던 법안 컨셉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기술 유출이 많다보니, 수·위탁계약을 전제로 한 사전교섭 단계에서 NDA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기술에 대해 보호장치를 두는 것이었음. 다만, 본계약을 맺은 후 추가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발급을 통해서 기술자료를 요청하도록 함. 개정안을 보니, 양자 간 중복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안했던 바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음.

<반대 의견>

○ (B단체) 비밀유지계약은 개인 간 사적 계약의 분야인데, 공적인 부분에서 의무화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우려됨. 사적 계약의 범위는 계약 체결 여부부터 시작하는데, 사적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함.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동 법안이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러한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음. 두 번째, 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 대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단순 제안서, 아이디어를 던지면서 기술탈취 쪽으로 가게 되고 계약 의무화까지 간다면 결국에는 거래 자체가 위축, 왜곡될 것으로 생각함. 기업간 상생협력 취지에도 벗어나고,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현재는 자율사항인데도, 2019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0%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나머지 40%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로 83%가 실질적으로 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결론적으로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거래를 오히려 위축시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지 우려됨.

○ (○○○위원) 계약 자유라는 일반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하나, 실제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체결

할 것인지는 당사자 간 합의를 함. 본 계약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인데, 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위탁업체가 어떤 피해를 보는지?

○ (B단체)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아이디어 던진 것을 기술자료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밀유지계약을 맺자고 했을 때, 대기업 입장에서는 절차, 과태료, 기업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꺼리게 됨.

○ (○○○위원) 개정안을 보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비밀로 취급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합의해준다고 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 (B단체) 공정위에서 10만 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술자료를 요구한 비율이 0.7%,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비율이 0.5%임. 0.5% 정도 유용 혐의가 있고, 소송까지 가서 확정된 사례는 더 작아질 것임. 실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유용, 탈취 사례가 적음. 두 번째로 비밀유지계약이 본계약도 아닌데 바로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기술자료의 범위가 특허처럼 한정된 것도 아니고 광범위함. 아무 것이나 주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 대기업들이 비밀유지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밖에 없고, 일단 체결하고 추후에 보면 범용기술일 수도 있음. 그러면 제3자들이 그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을 때, 대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짐.

○ (○○○위원) 실태조사에서 60%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문제가 있는지?

○ (B단체) 현재는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핵심 기술에 대해 서로 비밀로 보호하고 있어, 크게 분쟁이 되거나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자율적으로 체결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의무화하면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 (B단체) 의무화하면 모든 거래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김. 40%는 필요가 없어서 체결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까지 다 체결해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짐.

○ (○○○위원) 위탁기업이 원해서 NDA를 체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NDA를 체결한다고 응답한 60% 중에 위탁기업이 요청한 경우와 수탁기업이 요청한 경우의 비율을 나눌 수 있는지?

○ (B단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엄밀한 자료가 나와있지 않아 구분이 어려움.

○ (○○○위원) 기술자료를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됨. 기술자료 여부를 합의할 방법이 법에는 없고,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결정이 나야 되는 것으로 보임. 현재 기술자료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는지?

○ (B단체) 기술 임치제도의 경우 서로 기술자료인지 따질 필요 없이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그래서 굳이 의무화하기보다 기술 임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음. 대기업들이 오히려 기술 임치제도를 활용하라고, BB기업 같은 데는 수십억씩 들이는 그런 상황임. 굳이 법에서 강제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음.

○ (○○○위원) 기술 임치는 특허권과 관련된 부분 이외 경영 정보, 영업상 노하우 등도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가 애매해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음.

○ (○○○위원) 위탁기업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기술 유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NDA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은지?

비밀의 대상을 계약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임.

○ (B단체) 위탁기업도 기술을 하청시켜서 만드는 케이스들이 있으니 수요는 있을텐데, 기업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제화시키게 되면, 잘 하고 있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음. 현재 기술 임치도 하고, 위탁기업이 중요한 기술을 하청시키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40%는 필요가 없어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비밀유지가 필요 없는 것도 많은데 그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걱정됨.

○ (○○○위원) 기술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하도급법 등에서 비밀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요건으로 두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규정하며 각 호로 나눔. 지금 개정안에서도 기술자료를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해 뒀는데 이 부분이 확대해석될 가능성은 적지 않나 싶음.

○ (B단체) 기술자료가 특정 구체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노하우, 생산과정에서 경제적 유용성 등도 될 수 있음. 물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겠지만 법 단계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함. 지금 법에서는 생산방식, 운영방식, 마지막 제품 다 기술자료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음.

○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되어 있어 규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도급법을 보니 각 호에 나와있는 것이 명확함. 그럼 굳이 계약 체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본 것임.

○ (○○○위원) 기술자료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의무화된다고 하면 쌍방의 이해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함. NDA 표준안을 보니 비밀정보로 되어 있어 범위가 넓어졌음. 그렇다면 기술자료를 명확히 규정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은 어떤지?

○ (B단체) 특허 등은 엄격한 심사 하에 특허 기술로 공개를 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임. 그러나 기술자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됨.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게 될 수 있음.

○ (○○○위원) 법령에서 기술자료를 아무리 구체적으로 정해도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의 이해가 다를 수 있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의 유지가 필요한 범위를 정할 텐데, 그 부분은 위·수탁기업 합의를 통해 정함. 그렇다면 법령에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구체적 거래관계에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탁기업 입장에서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부터 보호되는 측면도 있지 않은지?

○ (B단체) 충분히 위·수탁기업 쌍방 수요가 있음. 그런데 의무화 시켜서 너도 나도 대기업에게 체결하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임.

○ (○○○위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규제가 나오는 것인데, 혹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 (B단체) 기술 임치제도가 있음. 일부 대기업은 중소 협력업체에게 임치료를 내 주고, 절차를 챙겨주고 있음. 기술 임치제도를 활용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위원) 대안으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제도가 왜 이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은 있는지?

○ (B단체) 중소기업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곳도 많고, 기술을 임치할 경우 매년 임치료를 내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음. 가장 큰 이유는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음.

○ (○○○위원) 위탁업체에서는 보통 어떤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지?

○ (B단체) 기술을 잘 알아야 제품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함.

요즘 기술은 처음부터 그 컨셉을 가지고 마지막 광고까지 같이 함. 기술자료가 처음부터 필요할 수도 있음.

○ (ㅇㅇㅇ위원) 원가를 삭감하는 쪽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한다고 들었음.

○ (B단체)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걸로 뉴스에는 나오고 있음.

○ (ㅇㅇㅇ위원) 수탁업체가 보호를 요청했는데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기술탈취가 우려될 때 수탁업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B단체) 기술탈취를 당한 경우 지금도 굳이 상생협력법까지 안 가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하도급법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 물론 소송까지 가려면 중소기업 주장은 협력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권리를 찾으려면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음.

○ (B단체) 덧붙이자면 대기업에서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 통상 구두로 요청하지 않고, A부터 Z까지 자료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요청하고, 중소기업에서도 그에 맞춰 자료를 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넘어갔는지 명확하게 범위가 정해지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 유출 여부를 법원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생김. 대기업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음. 만약 의무화된다면 위탁기업 입장에선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 기술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장 넓은 범위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중소기업이 제안하는 기술이 하이테크 기술도 있겠지만, 보통 범용기술에서 약간 응용된 기술이 대부분임. 그런 기술은 외국 부품사들도 갖고 있고, 이미 많은 기술자료를 주고 있어 외국기업과 거래를 하는 유인으로 작동함. 비밀유지계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데, 이것을 강제하면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래마저도 위

축될 가능성이 높음. 직접 들은 사례였는데, A부터 Z까지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함. 요구를 했는데, A~Z에 더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범용 기술을 하나 더 붙여서 메일을 보냄. 만약 거래가 안 되면, 이 기술자료까지 다 달라고 했고 줬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건다고 함. 만일 의무화되면 장단점이 있을텐데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날 개연성이 높다는 생각에서 반대함.

○ (ㅇㅇㅇ위원) 중소기업에서는 비밀유지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B단체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중소기업 입장에 따라 해보고 향후 개정할 수는 없는지?

○ (B단체) 일단 법이 만들어지고 분쟁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기술유출 혐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7%이며 실제 유출했다고 판단되는 비율은 그보다 낮을 것임. 그럼에도 100% 다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우려됨. 이미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탈취가 줄어들고 있음.

○ (ㅇㅇㅇ위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법으로 호소할 정도면 그만큼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 측에서는 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함에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함.

○ (B단체) 실태조사를 보면, 기술자료를 서면요구한 비율이 0.7%이고,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음. 물론 걱정하는 여러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의무화시키면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우려됨.

(2) 부처 의견 청취

○ (중기부)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자료가 제공되었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관행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기업과 거래를 할 때 대부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또한 국내 기업이 하청 기업들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도 비밀유지계약을 요구, 체결하고 있음.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지위관계 등 여러 사유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못하다 보니 불필요한 기술유출 문제, 분쟁 소지가 있음. 이에 이를 법으로 의무화해서 문화로 정착시키고, 불필요한 기업 간 분쟁을 없애고자 예방적 차원에서 제안함.

○ (○○○위원) 비밀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대상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당사자들 간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인지?

○ (중기부)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로 할 범위를 정하여 비밀대상 기술자료로 봄.

○ (○○○위원) 현실적으로 기술자료인지 아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데, 대기업에서 기술자료가 아니므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 (중기부) 기업이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기술자료 여부를 확인할 것임. 중기부에서 조사를 통해 기술침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기술자료 여부를 확인함.

○ (○○○위원) 중기부가 판단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 (중기부) 기술자료의 정의에 비밀관리성이 포함됨에 따라 비밀관리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임.

○ (○○○위원) 반대입장에서는 기술자료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대안으로 기술 임치제도가 있으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거래가 위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중기부) 대기업들이 해외기업과 거래를 할 때 대부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 기업 간 거래에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영업비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상 비밀 같은 정보를 임치기관에 맡기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 사실에 대한 추정력만 부여하는 제도로, 비밀유지계약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되지 않음.

○ (○○○위원) 경영상 정보와 영업비밀이 거의 같아 보임.

○ (중기부) 거의 같지만,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비밀관리성이 없어도 임치가 가능함.

○ (○○○위원)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분이고, 기술자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주관적으로 결정할 부분으로 보임.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자료인데 대기업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NDA를 요청하면 거래가 깨지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고 해서 물어봄.

○ (중기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술 개발 사실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비밀유지계약은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공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차이가 있음.

○ (○○○위원) 이 규제는 외국기업,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 (중기부) 국내 지사를 두면 국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위원) NDA는 민사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 외국기업이 행정적인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 (중기부) 변호사,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국내 대기업과 해외기업 간 계약에서 거의 100%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함.

○ (○○○위원) 외국기업은 NDA 체결을 기업 간 사적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을 텐데,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할지 조사해 봤는지?

○ (중기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음.

○ (○○○위원) NDA 체결을 의무화하면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가 위축되고 해외기업과의 거래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근거는?

○ (중기부) 그런 주장을 대기업 측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해외기업과 거래를 할 때 NDA를 대부분 체결하고 있어 NDA 때문에 해외기업과 거래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위원) 비밀유지계약서에 들어가는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중기부) 우리 부에서 비밀유지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술보호 울타리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고, 해당 표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개념,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

○ (○○○위원) 법률안에는 기술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계약서에는 비밀정보라 되어 있고, 서명, 구두,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등으로 되어 있음. 구두나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도 NDA를 다 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게 되는데,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중기부)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표준안을 다시 만들겠음. 해당 표준계약서는 예시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를 통해서 비밀유지계약서 내용 작성이 가능함.

○ (○○○위원) 민사로 해결할 것을 왜 의무화하는지 문제인데,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중기부) 표준 비밀유지협약서를 만들어 사이트에 공지하고, 팜플렛을 배포하고 있으나, 아직 중소기업들이 중요성을 많이 인지하지 못함. 그러다보니 의무화를 통해 문화적으로 정착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간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가 30%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상거래상 당연히 체결하는데, 우리나라는 관습도 없고, 침해 사례가 많아 의무화하고자 함.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면, 0.5% 내외 기업이 기술탈취 경험이 있다고 응답이 나오고, 피해액을 산출해보면 5천억 정도로, 피해가 작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움. 그리고 기술탈취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 계기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 개정안에 따르면 NDA와 관련 중기부가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는 이미 체결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극히 일부인데, 사업장에 들어가서 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지?

○ (중기부) 매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1만개 사 정도 하고 있는데, 응답한 기업 중 비밀유지계약을 미체결했다고 응답한 경우 먼저 서면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부과 전 영업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함. 그런 경우 방문 2주 전에 통지해서 일정을 맞춰서 사업장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위원) 당사자 간 기술자료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문제가 발생함. 중기부에서 기술자료 여부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판단에 시간이 걸린다면 바로 기술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기술자료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 (중기부)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가치 평가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 이를 활용해서 기술이 가치가 있는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또, 특허청과 협의를 통해서 관련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협조 요청이 가능함.

○ (○○○위원) 기술자료 여부 판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 (중기부) 위·수탁거래 개시 전 위탁기업에서 수탁기업의 자료를 먼저 보고 체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충분히 비밀자료임을 인식할 수 있음. 공개된 자료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임.

○ (○○○위원) 그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기술자료 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기술자료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안에서 모호한 경우가 있어,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음.

○ (중기부) 만약 공개된 기술자료고, 수많은 수탁기업이 그것을 생산할 수 있다면, 비밀유지계약 체결 없이 일반적인 수·위탁거래를 할 것임. 위탁기업이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 수탁기업에게 어느 정도 비밀관리성을 가졌는지, 공개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탁기업에게 요청하여 알아볼 수 있음. 또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하고, 비밀유지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중기부에 분쟁조정 신청, 조사 요청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음

○ (○○○위원) 입찰을 할 때, 여러 기업들이 제안하는데 제안을 할 때도 비밀유지계약을 맺는다면 수·위탁거래에서 사전적인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중기부) 오히려 입찰과정에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자료가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입찰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함.

○ (○○○위원) 공모 과정에서 기술자료 범위가 모호한데, 아이디

어나 구두로 이야기한 것들 모두 보호를 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음.

○ (중기부)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안의 아이디어, 구두 관련된 것은 기술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한정하는 것임. 마케팅이라든지 아이디어의 경우, 실제 기술적으로 구현된 것이 아니라면 상생협력법을 적용할 수 없고, 아이디어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음. 사례를 들면 제안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외국에서 유사한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했던 사례가 있음. 그런 사례를 보호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체결 전 단계에서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만들더라도 분야가 다양하고, 결국 비밀유지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봄. 비밀유지계약이 필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면, 규제로 하기보다는 중기부에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을 돕는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지?

○ (중기부) 현재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에서 200여명의 전문가를 두고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기업에서 신청할 경우 직접 방문해서 3일간 무료 자문을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검토해주고 있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인식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여겨짐.

(3) 위원회 논의

○ 차기 대면회의에서 추가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심의 결과

○ 본 안건은 차기 대면회의에서 **계속심사**